

제 385 호

1973.7.9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61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보

차 례

이 인규보준공치는 비이로고
 권임으로 담당하있다.
 1973. 7. 9
 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- ◎ 조 례
 - 제 787 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조례 개정조례 3
- ◎ 규 칙
 - 제 1317호 서울특별시 무허가 건물정리 사업
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 4
- ◎ 고 시
 - 제 113 호 방화지구 지적승인 7
 - 제 114 호 도시계획시설 일부 변경 및 지적 변경승인 7
 - 제 115 호 일단의공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추가 8
- ◎ 사 령 10
 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 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

1973년 7월 5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787호

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
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 (설치) ①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그 질병을 진료하기 위하여 시립병원(이하 "병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병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제 2 조 (원장) ①병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지방의무부 기감으로 보한다.

②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장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 3 조 (조직) ①병원에 서무과, 약제과, 간호과와 진료에 필요한 과(), 실을 두며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, 약제과장은 지방약무기좌, 간호과장은 지방간호기좌로 보한다.

②과와 진료에 필요한 과 및 실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4 조 (공무원의 정원) 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5 조 (사용료 및 수수료) ①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한다.

②전항의 사용료와 수수료는 따로 조례로서 정한다.

제 6 조 (진료허가)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이외의 자의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리사업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
1973년 7월 5일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317호

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사업보조금지급조례시행규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무허가건물정리사업보조금지급조례 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지급대상) 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은 조례제 2 조 제 1 호에 규정된 건물임이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되었거나 재산세의 납부등으로 공무상 확충된 건물이어야 한다.

② 조례 제 3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
1. 전세입자가 1 세대 본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입자

2. 전세입자가 2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전세입자. 다만 주된 전세입자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닐 때에는 세입자 및 정리 당시의 거주자 전체

제 3 조 (지급대상에서의 제외)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.

1. 동일인 (동일 가족내의 타인도 같다)이 2 동이상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거나 전세입자로 되어 있을 경우 1 동 이외의 무허가 건물
2.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 건물의 건축이 가능한 자기소유 토지상의 무허가건물
3. 타인 소유토지 (사유지) 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대책을 제공한 무허가건물

제 4 조 (보조금지급액) 조례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액은 무허가건물 1 동당 10 만원으로 한다.

제 5 조 (사무의 위임)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

제 6 조 (보조금의 지급결정) ① 관할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「무허가건물보조금지급철회법」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1. 조례 제 3 조 및 이규칙 제 2 조와 제 3 조에 의하여 작성한 지급대상자 명부
- 2. 항축도에 의한 철거표시도
- 3. 현장사진

제 7 조 (보조금지급결정의 통보) 구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 사항을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.

제 8 조 (보조금의 지급신청)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

관할 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- 1. 보조금지급 신청서 (별표서식제 1호)
- 2.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
- 3.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

제 9 조 (보조금의 지급) ① 구청장은

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남긴 받아야 한다.

③ 보조금지급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금지급 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(보조금의 일부선지급) ① 보

조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조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액의 3 할의

한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
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 ③보조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
 비서류는 제 8 조 각호에 의하여 처
 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
 명시하여야 한다.

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조금지급대
 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
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
 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
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지급
 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 (사전변경에 따른 결정 취소) 제 6

부 칙

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이 .규칙은 197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별표서식 제 1 호

보 조 금 지 급 신 청 서

1. 대 상 자

주소 :

성명 :

생년월일 :

2. 철거위치 :

구

동

번지

3. 철거일시 :

년

월

일

4. 신청액 :

원

1973

신 청 인 인

○ ○ ○ ○ 구청장 귀하

첨부 : 1. 인감증명 1통

2. 주민등록초본 1통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13 호

방화지구지적승인고시

1. 건설부 고시제 215 호 (73.6.5) 로 결정한 서울도시계획 방화지구 (시흥시장) 의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

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3 . 7 . 2 .

서울특별시시장

1. 방화지구 결정 조서

구 분	위 치	면 적	비 고
방 화 지 구	영등포구 시흥동 364부락	2,640㎡	시흥시장용지

비첨 :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 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함.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14 호

도시계획시설일부변경및지적변경승인

1. 당시판대 도시계획시설 일부변경을 도시계획법제 12 조와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제 123 호 (73.4.4)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다.

1973 . 7 . 3 .

서울특별시시장

가. 개거일부변경 (복개) 조서

구 분	계 획	폭 원	연 장	면 적	기 점	종 점	비 고
기 점	복 개	3, 5	287	1, 004	울지로 6가 18 - 79	울지로 6가 18 - 27	복개후 상가 및 주차장시설복개후 도로시설
변 경	"	"	"	"	"	"	

나. 주차장 시설 취소 결정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주차장(공지)	을지로 5가 18 - 79 앞	1,003	복개후 주차장 (125.4미터×8미터)
변경	도로	"	"	복개후 도로 (125.4미터×8미터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5 호

일단의 공업 단지 조성 사업
실시계획인가추가고시

1. 서울시고시 제 55 호 (73.4.24) 로
일단의 공업 단지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
된바 있는 한국수출산업공단 제 3 단
지에 대하여 사업구역내 수용토지로
서 시행자인 수출공단이 도시계획법

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
용사용할 토지와 이해관계인의 주소
성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
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
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3. 6 . .

서울특별시 장

1. 사업시행지의위치 : 서울특별시
영등포구 가리봉동 326-1 의 609 필
경기도 시흥군 서면 칠산리
322 의 40 필

2. 사업의종류 : 일단의 공업 단지
조성사업
명 칭 : 한국수출산업공단
제 3 공업단지
시 행 면 적 : 378,600 평

3.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: 서울특별시
영등포구 구로동 188-5 한국수출산업공단
이사장 최 명 현

4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
착수 : 73 . 4
준공예정일 : 74 . 12 . 31

5.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
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
이외의 권리명세

1837

토지의 표시				소유자		이해관계인		소유권이외의권리	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	내용	권리자
독산동	649	답	920	서울영등포구 독산동 544	이경수				
가리봉동	504-2	구거	171	서울영등포구 구로2동 413-13	영흥지개량 조합청산인 이	서울영등포구 가리봉동 110-7	김선초		
"	518-18	"	179	"	"	서울영등포구 구로동 산 11	김종식		
"	515-12	"	19	서울성북구 동선동 1가 24	전주이씨 대표이	안성군안성권서리145	전주이씨 중		
"	515-18	"	99	"	"	"	"		
"	535-48	전	149	서울용산구 용문동 38-63	김영환			1962.2.27 압류	경기도
"	535-77	"	32	"	"				
"	535-78	"	1	"	"				
"	535-76	"	149	"	한경식				
"	535-49	"	36	서울영등포구 대방동 139-5	김정환				
경기도 시흥군 철산리	282-1	잡	2121	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135-1	한국철강주식 회사 강경호	서울중구남대문로 2가 140-2 日本東京都港区西 新橋1丁目2	한국산업 은행 三井物産	1972.5.8 근저당권 1972.1.27 가압류 1972.7.4 가압류	한국산업 은행 철산
"	283-1	"	1764	"	"	서울중구남대문로 3가 110	한국외환 은행	1968.2.2 지상권 1968.2.2 근저당권	한국외 환은행

6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(전항참조)

7. 인가내용: 별첨 인가조서 (생략)

서울특별시장

제 385 호

시

부

1973.7.9.

11-9

사 령

◎ 1973.7.1.

성북구(지하철과전중) 지방행정 주 박 병 기
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.

서대문구(지하철과전중) 지방행정 주 한 호 석
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.

영등포구(중주과전중) 지방행정 서 이 강 수
중주 근무를 명함.

중구(성동구과전중) 지방행정 서 정 난 수
성동구 근무를 명함.

(동대문구수도사업소) 지방행정 서 이 한 중
동대문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.

◎ 1973.7.2

관 광 과 지방행정 주 박 종 필
조경과 근무를 명함.

◎ 1973.7.4.

성 동 구 지방행정 서 선 제 홍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

위원회 결정에 따라 73.2.19
자(발령제 173 호) 징계(파면)

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하고
감봉 3 월에 처한다.

◎ 1973.7.5.

영 등 포 구 지적기원보 윤 임 상
지방지적기원보에 일함.

10 호봉을 급함.
개량 2 과 근무를 명함.

윤 동 장 기 지방전기사 홍 종 석
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

구회정리 2 과 지방토목기원보 김 상 덕
부직을 명함.

6 호봉을 급함.
개량 2 과 근무를 명함.

중 구 주 지방행정사 정 이 간
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.

서 대 문 주 지방행정사 김 주 환
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.

영 등 포 구 주 지방행정사 박 제 택
새마을지도과 근무를 명함.

서 대 문 구 주 지방행정사 허 한
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.

서 대 문 구 서 지방행정기원보 문 동 근
은평출장소 근무를 명함.

<p>통 계 과 지방행정 주 사 보 조경과 근무를 명함.</p>	<p>강 신 익</p>	<p>개량 2 과 개량1제장에 포함. 토 목 과 지방토목 (토목계장) 과 남부건설사업소장에 포함.</p>	<p>정 태 무</p>
<p>◎ 1973.7.6. 도시행정과 지방행정 주 사 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.</p>	<p>김 형 식</p>	<p>지방의무기과 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</p>	<p>김 상 태</p>
<p>영동출장소 지방건축 기 사 보 건축과파견 근무를 명함.</p>	<p>김 학 성</p>	<p>의약과 의무계장에 포함.</p>	
<p>총 무 과 지방전기 (관리계장) 과 기전과장 직무대리를 명함.</p>	<p>엄 병 호</p>	<p>◎ 1973.7.7.</p>	<p>정 연 순</p>
<p>포 장 과 토목기과 (시설계장) 토목과 토목계장 직무대리를 명함.</p>	<p>장 인 식</p>	<p>지방토목기원보 시보에 임함. 1호봉을 급함.</p>	
<p>남 부 전 설 지 방 토 목 사 업 소 장 기 과 조 회 범</p>	<p>조 회 범</p>	<p>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.</p>	
<p>서울특별시</p>			